

환경영향평가법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15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317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318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329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330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345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349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 · 제3항 관련)	351
[별표 4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352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352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360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361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362

목 차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362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363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363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36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67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369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372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373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375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37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79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381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381

목 차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382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382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383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383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384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384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385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385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387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388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389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389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390
[별지 제11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391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	391

목 차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392
[별지 제13호의2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393
[별지 제13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393
[별지 제13호의4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394
[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395
[별지 제13호의6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396
[별지 제13호의7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396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397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398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399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399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목 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21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23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23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24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24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24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25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26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29 제6조(위원의제척 · 기피 · 회피 등) 30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 해임 및 해촉) 32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33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37	제1조(목적) 1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 38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38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38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38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40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4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40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41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42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43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43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45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45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제출방법 등)· 46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48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48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50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50	
	제15조(설명회의 개최) 50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50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52	제5조(공청회의 진행) 51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54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5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58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8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61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61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64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68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69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54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56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57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8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61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63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64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66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68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69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 70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54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58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58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6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재협의) 71	제28조(재협의 대상) 71	
제21조(변경협의) 74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73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74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78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79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80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 80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81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81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81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8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85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84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86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85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87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제출방법 등) 8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00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102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공람 등) · 88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89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90 제39조(설명회의 개최) 91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93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95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96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97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98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98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00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02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104	제11조(공청회의 진행) 93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94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95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10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04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04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09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106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10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09	
제31조(조정 요청 등) 111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111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111
제32조(재협의) 112	제52조(조정 요청) 111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 112	
제33조(변경협의) 115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113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20	제54조의2 삭제 114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제출서류 등) .. 115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115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121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123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123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24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26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 126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125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기관) 127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126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28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128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 준공 · 중지 · 재개의 통보) 128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129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129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129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129
제40조(조치명령 등) 130		
제40조의2(과징금) 132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132	
제41조(재평가) 133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134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134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135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35	
	제58조의2(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136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39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139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140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41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41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143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14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44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44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47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 145	
제46조의2(변경협의) 148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148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51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52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152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152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153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153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155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155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156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157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158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158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159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160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160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 160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16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69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 170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 기준) ... 171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172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172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173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173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75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174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75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177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175 제25조 176
제55조(결격사유) 178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180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 181 제26조의3(권리 · 의무의 승계 신고) 182 제27조(업무의 폐업 · 휴업 신고 등) 183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85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79		
제56조의2(권리 · 의무의 승계) 182		
제57조(업무의 폐업 · 휴업) 183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183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업무 계속) 185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186		
제60조(보고 · 조사) 187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88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8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191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90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192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192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193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194	제69조의3(교육 · 훈련의 종류 · 시기 등) 193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194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197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 199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200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20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200
	제71조(응시자격) 200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200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204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204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제출) 204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205	
	제75조 삭제 205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20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206		제34조 삭제 206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207		제35조 삭제 206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207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208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208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208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 209		
제67조(청문) 211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209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211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212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12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213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14	제77조(위임 및 위탁) 214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226	제38조(규제의 재검토) 226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227		
제74조(벌칙) 2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5조(양벌규정) 231		
제76조(과태료) 232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32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6	
부칙 238	부칙 238	부칙 23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 정 1993. 6. 11., 법률 제 4567호 일부개정 1997. 3. 7., 법률 제 5302호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 5453호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 5454호 타법개정 1999. 1. 29., 법률 제 5733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 5877호 타법개정 1999. 2. 8., 법률 제 5864호 폐지제정 1999. 12. 31., 법률 제 6095호 타법개정 2004. 3. 11., 법률 제 7186호 일부개정 2003. 12. 30., 법률 제 7020호 타법개정 2005. 5. 31., 법률 제 7573호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 7459호 타법개정 2005. 5. 31., 법률 제 7561호 타법개정 2007. 5. 17., 법률 제 8466호 타법개정 2007. 4. 27., 법률 제 8404호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전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 9037호 전부개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2011. 8. 4., 법률 제11019호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5. 1. 20., 법률 제13040호 일부개정 2015. 1. 20., 법률 제13040호 일부개정 2015. 1. 20., 법률 제13040호 타법개정 2015. 7. 24., 법률 제13426호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32호 타법개정 2016. 1. 27., 법률 제13879호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32호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32호 타법개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106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2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17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17호 타법개정 2021. 8. 11., 법률 제18432호 일부개정 2024. 10. 22., 법률 제20518호 일부개정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타법개정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일부개정 2024. 10. 22., 법률 제20518호 타법개정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일부개정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일부개정 2024. 10. 22., 법률 제20518호	제 정 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 타법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94호 일부개정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7호 일부개정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 타법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1호 일부개정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1호 타법개정 1999. 4. 9., 대통령령 제16239호 타법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5호 타법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타법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4호 타법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 타법개정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6호 폐지제정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타법개정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타법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7호 일부개정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4호 타법개정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 타법개정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67호 일부개정 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7호 타법개정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 일부개정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3호 타법개정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 타법개정 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 타법개정 2005. 2. 7., 대통령령 제18695호 타법개정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타법개정 2005. 4. 30., 대통령령 제18818호 타법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 일부개정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 일부개정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2호 일부개정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 타법개정 2006. 3. 8., 대통령령 제19373호 타법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7호 타법개정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타법개정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타법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3호 타법개정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7호 타법개정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 타법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제 정 2000. 12. 30., 환경부령 제 115호 타법개정 2002. 8. 17., 환경부령 제 128호 일부개정 2003. 12. 19., 환경부령 제 149호 일부개정 2006. 2. 3., 환경부령 제 197호 타법개정 2006. 7. 4., 환경부령 제 215호 타법개정 2007. 10. 24., 환경부령 제 251호 타법개정 2008. 2. 26., 환경부령 제 278호 타법개정 2008. 3. 14., 환경부령 제 4호 타법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 281호 전부개정 2008. 12. 31., 환경부령 제 316호 타법개정 2009. 6. 30., 환경부령 제 336호 타법개정 2011. 10. 28., 환경부령 제 428호 일부개정 2011. 3. 25., 환경부령 제 403호 전부개정 2012. 7. 20., 환경부령 제 467호 일부개정 2014. 12. 2., 환경부령 제 580호 타법개정 2014. 4. 30., 환경부령 제 553호 타법개정 2014. 12. 16., 환경부령 제 581호 일부개정 2014. 12. 2., 환경부령 제 580호 일부개정 2016. 1. 14., 환경부령 제 636호 일부개정 2016. 11. 30., 환경부령 제 680호 일부개정 2017. 5. 30., 환경부령 제 700호 일부개정 2017. 5. 30., 환경부령 제 700호 일부개정 2018. 11. 29., 환경부령 제 780호 타법개정 2019. 12. 20., 환경부령 제 833호 일부개정 2019. 12. 30., 환경부령 제 838호 일부개정 2020. 5. 25., 환경부령 제 863호 타법개정 2021. 9. 16., 환경부령 제 942호 일부개정 2022. 4. 25., 환경부령 제 983호 일부개정 2022. 4. 25., 환경부령 제 983호 일부개정 2022. 12. 20., 환경부령 제1011호 타법개정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일부개정 2024. 8. 23., 환경부령 제1117호 타법개정 2024. 9. 26., 환경부령 제1120호 일부개정 2025. 2. 21., 환경부령 제1158호 타법개정 2025. 4. 11., 환경부령 제1169호 타법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7호 전부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 타법개정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타법개정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타법개정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8호 타법개정 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 일부개정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 타법개정 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0호 일부개정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2호 타법개정 2011. 4. 28., 대통령령 제22909호 타법개정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전부개정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전부개정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일부개정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3호 타법개정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2호 일부개정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 일부개정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0호 일부개정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0호 타법개정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 일부개정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 타법개정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 일부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 타법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6호 타법개정 2016. 12. 20., 대통령령 제27675호 타법개정 2016. 3. 25., 대통령령 제27057호 타법개정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 타법개정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 일부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 타법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 타법개정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일부개정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 일부개정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 타법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2호 타법개정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7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7호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2호 일부개정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3호 타법개정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 타법개정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69호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타법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3호 타법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3호 일부개정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타법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1호 일부개정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 타법개정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2023. 10. 18., 대통령령 제33824호 일부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3호 일부개정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타법개정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9호 일부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3호 일부개정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타법개정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 일부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3호 타법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6호 타법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2호 타법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7호 타법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일부개정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1호 일부개정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3호 타법개정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5호 타법개정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 기준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4. 2. 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1. 28., 2024. 10. 22., 2025. 10. 1.〉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2025. 10. 1., 2025. 10. 21.〉 1. 삭제 <2024. 4. 23.〉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6. 11. 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2.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8.>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2. 18.>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2025. 10. 1.>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③ 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31., 2025. 10. 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31., 2025. 10. 1.>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 3. 31., 2025. 10. 1.>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31., 2025. 2. 18.>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한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2025. 10. 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概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4. 11. 11., 2018. 11. 27.〉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2025. 10. 1.〉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제13조·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 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 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 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0. 21.〉 [본조신설 2016. 11. 2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 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2018. 11. 2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7., 2025. 2. 18.>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및 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2. 18.>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및 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2. 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5. 2.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8., 2025. 10. 1.>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1.]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5. 2. 18.>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	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 2. 2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2. 18.]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8.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의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27., 2023. 12. 19., 2025. 10. 1.>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	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2023. 3. 31., 2025. 10. 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3.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 [제목개정 2016. 11. 29.]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5. 10. 1.>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 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2. 2.]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9.>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5. 10. 1.>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 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 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 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 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 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정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 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 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다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본조신설 2025. 2. 18.]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	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특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5. 10. 1.>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8.>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 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 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3. 3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31.>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및 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2. 18.>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및 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2. 18.>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8., 2025. 10. 1.>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 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8., 2025. 10. 1.>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2. 18.>	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1.]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 2. 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5. 2. 2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2. 18.]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8. 10.>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 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 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 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7.>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2. 21., 2025. 10. 1.>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2. 2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 1. 한국환경연구원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 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1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 [제목개정 2016. 11. 29.]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4. 10. 2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3. 3. 2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5. 10. 1.>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 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25. 10. 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4. 10. 22., 2025. 10. 1.>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 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 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 2. 18.>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3. 31., 2025. 2. 18.>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를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2. 18.>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3. 3. 31., 2025. 2. 18.> 1. 제2항 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54조의2 삭제 <2025. 2. 1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8. 1. 16., 2019. 12. 31., 2022. 12. 20., 2023. 3. 31., 2023. 12. 19.>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25. 10. 1.>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 [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 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삭제 <2014. 11. 11.>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	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 2025. 2. 21., 2025. 10.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 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 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1.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25. 10. 1.>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5. 10. 1.>	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1. 27.] [종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12., 2023. 3. 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2018. 11. 29.,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2.,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를」에 따른 국립생태원 [본조신설 2015. 3. 30.]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18.>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본조신설 2018. 11. 27.]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 [제목개정 2020. 5. 2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5. 10. 1.>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 주체 등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 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 11.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7. 11. 28.] 제41조(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8. 17., 2025. 10. 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3. 31., 2025. 10. 1.>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18., 2025. 10. 1.>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58조의2(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다)·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 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 시·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반려 및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금지 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 시·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시·도지사가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 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그 밖에 시·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3. 시·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시·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나. 그 밖에 시·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4. 시·도지사가 시·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 [본조신설 2025. 2. 18.]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3. 환경보전방안 [본조신설 2025. 2. 18.]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4. 10. 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4. 2. 20., 2024. 10. 22., 2025. 10. 1.〉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 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삭제 <2024. 10. 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24. 10. 22.>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	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 2. 18.> [본조신설 2016. 11. 29.]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5. 10. 1.>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12. 30., 2016. 11.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목개정 2016. 5. 29.]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2025. 10. 1., 2025. 10. 21.>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	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26., 2023. 3. 31., 2024. 5. 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	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 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 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 예측 · 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 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 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 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 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 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 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 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 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	[본조신설 2025. 10. 21.] [중전 제67조의2는 제67조의6으로 이동 <2025. 10. 21.>]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10. 22.]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1.] [종전 제67조의3은 제67조의7로 이동 <2025. 10. 21.>]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대상사업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3.]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5. 10. 2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 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본조신설 2025. 10. 21.] [종전 제67조의4는 제67조의8로 이동 <2025. 10. 21.>]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럼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10. 22.]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 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4. 10. 22.〉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종전 제67조의5는 제67조의9로 이동 <2025. 10. 21.〉]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2.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 2016. 5. 29., 2025. 10. 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67조의2에서 이동 <2025. 10. 21.〉]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형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형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형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 10. 21.>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3에서 이동 <2025. 10. 21.>]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0. 23.>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4에서 이동 <2025. 10. 21.>]	[본조신설 2016. 1. 14.] [제22조의3에서 이동 <2025. 10. 23.>]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25. 10. 1.>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력 평가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5에서 이동 <2025. 10. 21.>]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제25조 [제22조의2로 이동 <2014. 12. 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 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 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 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 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 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 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 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 2022. 4. 25., 2025. 10. 1.>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 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 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조사·측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 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 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8. 11. 29.]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0조(보고·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설 2016. 5. 29., 2025. 10. 1.〉		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 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 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 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 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 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 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 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7. 5. 30.]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2025. 10. 1.>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제목개정 2024. 10. 22.]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35조에서 이동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1. 29.]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5. 29.]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		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 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5. 29.]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 11. 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5. 10. 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1. 29.>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 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 5. 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 5. 29.>	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4., 2017. 5. 30., 2024. 9. 26., 2025.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9. 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 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29.]	조부모·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 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9. 11. 26.]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75조 삭제 <2016. 11. 29.>	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5. 10. 1.> 제34조 삭제 <2016. 1. 14.> 제35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0. 1.〉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	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 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7. 11. 28.]		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1. 8. 17., 2025. 10. 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5. 10. 1.>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25. 10. 1.>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5. 10. 1., 2025. 10. 21.> 1.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삭제 <2025. 10. 21.>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 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 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 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의 접수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오.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12., 2025. 10. 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 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 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2025. 10. 1.>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 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신설 2016. 11. 29., 2025. 10. 1.〉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 5.,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는 것 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다. 삭제 <2021. 1. 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5. 10. 1.>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5. 10. 1.>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3. 3. 7., 2025. 10. 21.>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25. 4. 11., 2025. 10. 1.> [본조신설 2014. 4.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10. 22.>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6. 5. 29., 2017. 11. 28., 2024. 10. 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2024. 10. 22.>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 3제7항제1호·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 자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4. 10. 22.>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24. 10. 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 <2016. 5. 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1. 28.〉 -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5. 10. 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	부칙 〈제4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한	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table> <tr> <td>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td> <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td> </tr> <tr> <td>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td> <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 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table border="1"><tr><td>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td><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1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6. 1. 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80호, 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	부칙 〈제780호, 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 2020. 5. 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부칙 〈제983호, 202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8. 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117호,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 2024. 9. 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4항 단서, 제4항 각 호 및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8호, 2025. 2. 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부칙 〈제1169호, 2025. 4. 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한다. 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⑭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	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	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호, 2025. 10. 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 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 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 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 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⑳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 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 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 법」 제27조”로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⑱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	전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①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②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③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③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③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③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㉓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㉗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부칙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td> <td>「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㉓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td> <td>「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③④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③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⑨까지 생략 ⑤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나. 도로의 건설</td><td>「도로법」 제6 조제1항에 따 른 도로 건설· 관리계획</td><td>「도로법」 제6 조제5항에 따 라 도로관리청 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td></tr> </table>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 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 조제1항에 따 른 도로 건설· 관리계획	「도로법」 제6 조제5항에 따 라 도로관리청 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 조제1항에 따 른 도로 건설· 관리계획	「도로법」 제6 조제5항에 따 라 도로관리청 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1019호, 2011. 8.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부칙 <제25713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table> <tr> <td>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td> <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r> <td>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td> <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d>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td><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tr><td>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td><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table>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40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 생략 부칙 <제26170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38호, 2015. 7.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807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생략	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및 반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 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 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057호, 2016. 3. 2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d>6)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 림복지진흥계획</td> <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6)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 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 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tr><td>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td><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부칙 〈제27285호, 2016. 6.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5106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	부칙 〈제2763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62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32호, 2021. 8.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34호, 2024. 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8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1항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호 · 제2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 ·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㉙ 생략 부칙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4항 전단, 제35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39조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869 483 1391 751"> <tr> <td>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td><td>「공 항 시 설 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td><td>「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869 834 1391 1362"> <tr> <td>8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사업</td><td>「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 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td><td>「공 항 시 설 법」 제 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실시 계획의 고 시 전</td></tr> </table>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 항 시 설 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 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 항 시 설 법」 제 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실시 계획의 고 시 전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 항 시 설 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 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 항 시 설 법」 제 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실시 계획의 고 시 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4조제1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3항·제4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6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24조제8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4항 전단,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4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4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2항·제4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 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 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 제52조의3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5 및 ④6 생략 부칙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2까지 생략 ③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 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 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4까지 생략 ②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table> <tr> <td>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d>「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 </tr> </table>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 <td>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d>「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 </tr> </table> 부칙 <제29311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 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를 “기술인은”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 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 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 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 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29707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0482호, 2020. 2. 2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0673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04호, 2020. 5.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⑩까지 생략 ③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30877호, 2020. 7. 2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1169호, 2020. 11.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76호, 2021. 3. 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3호, 2021. 6.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1803호, 2021. 6. 22.〉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4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6까지 생략 ②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바. 수 자원의 개발</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댐건 설기본계획</td><td>「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 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관리	바. 수 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댐건 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 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수 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댐건 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 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868호, 2022. 8. 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9호, 2023.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33824호, 2023. 10. 18.>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3호, 2023.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1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를」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34656호, 2024. 7.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4885호, 2024. 9.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35152호, 2024. 12. 31.〉 (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 2”로 한다. 부칙 〈제35167호, 2024. 12. 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5273호, 2025.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 목·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73호, 2025. 9. 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d>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중 다음</td> <td>「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td> </tr> </table>	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중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중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345킬로 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 길이(「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지중화 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 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부칙 <제35804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7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5항·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 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21호, 2025.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라목·마목·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라목·마목·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라목·마목·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 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317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318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329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330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345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349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 · 제3항 관련)	351
[별표 4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352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352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360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361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362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362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363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363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364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가) 국가 환경정책
 -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 1) 계획의 적정성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2) 입지의 타당성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4) 수환경의 보전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1) 환경기준 부합성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 1) 동·식물상
-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 1) 기상
- 2) 대기질
- 3) 악취
-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 1) 수질(지표·지하)
- 2) 수리·수문
-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 1) 토지이용
- 2) 토양
- 3)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 2) 소음·진동
- 3) 위락·경관
- 4) 위생·공중보건
- 5) 전파장해
-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 1) 인구
-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1) 사업개요
- 2) 지역개황
- 3) 자연생태환경
- 4) 생활환경
- 5)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2) 대기질, 악취
-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6) 경관
-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8) 인구, 주거, 산업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항만의 건설·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라. 수자원의 개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때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해당 계획의 확정 전
바. 산지의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의 확정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특정지역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계획의 확정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차. 삭제 <2023. 12. 19.>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6)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계획의 확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삭제 <2016. 11. 29.>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4) 삭제 <2016. 11. 29.>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6) 삭제 <2016. 11. 29.>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삭제 <2015.12.30.>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타. 산지의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의 확정 전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삭제 <2022. 12. 20.>	
	9)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섬발전심의회위원회의 심의 전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삭제 <2016. 11. 29.>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는 때
	15) 삭제 <2014.12.30.>	
	16) 삭제 <2014.12.30.>	
	17) 삭제 <2014.12.30.>	
	18) 삭제 <2014.12.30.>	
	19) 삭제 <2014.12.30.>	
	20) 삭제 <2014.12.30.>	
	21) 삭제 <2014.12.30.>	
	22) 삭제 <2014.12.30.>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6) 삭제 <2016. 11. 29.>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산업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삭제 <2016. 11. 2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 삭제 <2022. 12. 20.> 3) 삭제 <2022. 12. 20.>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5) 삭제 <2022. 12. 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더. 삭제 <2016. 11. 29.>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나. 삭제 <2025. 10. 21.>
 -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 라. 삭제 <2025. 10. 21.>
 - 마. 삭제 <2025. 10. 21.>
 -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 삭제 <2025. 10. 21.>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삭제 〈2022. 12. 20.〉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2) 시장·군수등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345킬로 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 길이(「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 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 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淤)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심의를 받는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설묘지 및 시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삭제 <2017. 3. 29.>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table border="1"> <tr> <td>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td> <td>+</td> <td>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td> </tr> <tr> <td>30만제곱미터</td> <td></td> <td>5만제곱미터</td> </tr> </table> 나) <table border="1"> <tr> <td>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td> <td>+</td> <td>지정폐기물 매립용적</td> </tr> <tr> <td>330만제곱미터</td> <td></td> <td>25만제곱미터</td> </tr> </table>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 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5만제곱미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	+	지정폐기물 매립용적	330만제곱미터		25만제곱미터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5만제곱미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	+	지정폐기물 매립용적												
330만제곱미터		25만제곱미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 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비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

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text{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dots$$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2.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 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업의 승인등 전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 3) 주차시설 설치사업

-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frac{\text{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text{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frac{\text{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text{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dots$$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4. 수자원의 개발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설치공사
8. 폐기물 처리 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5\text{만제곱미터}}$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세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세제곱미터}}$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제6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보호물(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
-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마.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사.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서식지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판단한다)
-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차.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 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말한다)
- 파.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너.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2. 생활환경 영향인자

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별표 4의4] 〈개정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제67조의7제3항 관련)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총괄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2)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구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자연 생태 환경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 분야)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구분	필요 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토지 환경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농림토양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생활 환경·기타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구분	필요 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수행한 사람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명 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검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 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책임 조사원 급	2명 이상	육상 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 동물	1)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구분	필요 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전문 조사원 급	4명 이상	육수 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1)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	1)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일반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 심화학습을 이수한 후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구분	필요 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쌍안경	2대
	줄자(5m, 50m)	1세트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채취할 때 쓰는 송곳 같은 기구)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조류	망원렌즈(500mm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플랑크톤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siphon 시스템	1대

비고

-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를 관한 업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며,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 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 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 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 (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자연 생태 환경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인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인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토지 환경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농림토양평가 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생활 환경 · 기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2)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3) 산업기사 : 환경분야, 조경분야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책임 조사원 급	2명 이상	육상 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 동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수 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 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 조사원 급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2)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통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조류	망원렌즈(500mm 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 플랑크톤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siphon 시스템	1대

비고

-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부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와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69조의2 관련)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고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초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를 관한 업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개정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	7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40시간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22. 8. 9.〉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4의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

(제72조제4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시험 (필기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제2차시험 (면접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

(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별표 9] <개정 2021. 8. 10.>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호	200	300	500
다.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호	200	300	500
라.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호	500	700	1,000
마.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3호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	500	700	1,000
사.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	200	300	500
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5호	200	300	500
자. 법 제40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2,000	3,500	5,000
차.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2,000	3,500	5,000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2,000	3,500	5,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	500	700	1,000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3호	500	700	1,000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	500	700	1,000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8호	200	300	500
더.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8호의2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9호	200	300	500
머.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1호	100	200	300
버.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2호	100	200	300
서.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3호	100	200	300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5호	500	700	1,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369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372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373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375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377

[별표 1] 〈개정 2025. 2. 2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 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 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 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대상사업		조사기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장(貯炭場)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대상사업		조사기간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 선로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사업 착공 시부터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 시설의 설치사업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대상사업		조사기간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민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15. 폐기물처리 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1)부터 3)까지의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4)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다. 영 별표 3 제15호가목5)의 시멘트 소성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바.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모래· 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 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중지기간(공사를 중지한 날부터 공사를 재개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된 항목별 조사주기(해당 항목별 조사주기 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 2] 〈개정 2025. 2. 2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별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국가유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별표 3]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 (장비·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5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6호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7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인정 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8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381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381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382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382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383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383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384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384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385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385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387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388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389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38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390
[별지 제11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391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	391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392
[별지 제13호의2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393
[별지 제13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393
[별지 제13호의4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394
[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395
[별지 제13호의6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396
[별지 제13호의7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396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397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398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399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399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고려 사항	환경영향의 중대성	[] 상당 [] 불분명 [] 미미
	환경성평가의 가능성	[] 가능 [] 어려움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있음 [] 없음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이유		
작성자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관련 상·하위 계획과 의 위계관계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작성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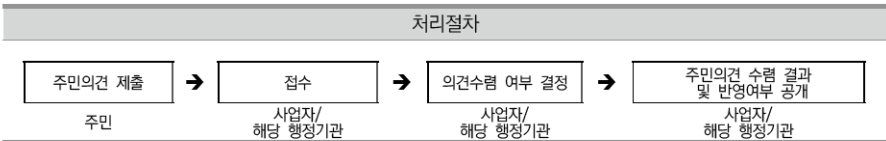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00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overline{m}$ $\overline{o}$ $\overline{u}$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21.>

[] 공청회
[]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온라인 공청회의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4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참석자(주인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합니다) 명단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주인	→	접수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 11. 29.>

의견 재수렴 신청서

계획명 또는 사업명		
계획의 범위 또는 사업장 위치		
계획수립기관 또는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의견 재수렴 신청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⑧ 이행(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협약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약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약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약기관 및 협약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약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약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년)	
	이번회	년 월 ~ 년 월	
협약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을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협의의견 포함) 제시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		사후환경조사계획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 지점	조사 지점 특징	조사지 점선정 사유	조사 주기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지표· 지하)																
해양 환경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소음· 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현황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측정항목, 지점, 주기 등의 변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대기환경	기상			
	수질(지표·지하)			
수질환경	토지이용			
	토지이용			
토지환경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자연생태환경	인구			
	인구			
생활환경	인구			
	인구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중지
[] 공사재개
공공
통보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평가 협의일	
통보 내용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 공사 재개	중지일
		공사 재개일
		중지 또는 재개 사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 착공
[] 준공
[] 공사중지
[] 공사재개
을
(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기관명:)

1. 총괄

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	조사 사업장 수 (개소)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	비 고

2. 세부 내용

①일련번호	②사업명 (사업시행자)	③소재지	④조사일	⑤조사결과 (미이행사항)	⑥조치내용	⑦조치결과	⑧비고

※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등록 20 일 변경 7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 제1종 [] 등록 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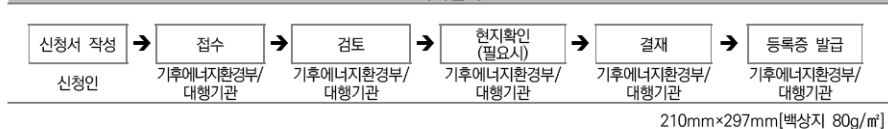
[] 제2종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앞쪽)

등록번호 제 - 호

제()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실 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389 -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2. 4. 25.〉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명								
2. 환경영향평가등 업무개요								
대행자 (대표회사)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3.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대행개요								
대행금액	원	계약일		준공 예정일				
해당 연도 대행금액	원	해당 연도 계약일		해당 연도 준공 예정일				
4.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별 재대행 예정계획(해당 연도)								
재대행할 주요 업무	재대행자			재대행 용역				
업무명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업종	① 선정 방식	세부 업무내역	재대행 금액		
						② 재대행 부분금액(A)	③ 재대행 계약금액(B)	④ 재대행률 (B/A)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선정방식은 재대행자를 선정한 주요 방식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재대행 부분금액은 재대행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재대행 계약금액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재대행률은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신청인이 공동일 경우 공동신청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종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종별	등록번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승계구분	[] 상속	[] 양도·양수	[]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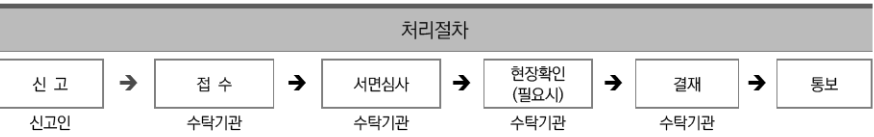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10. 1.>

환경영향평가업 []폐업
[]휴업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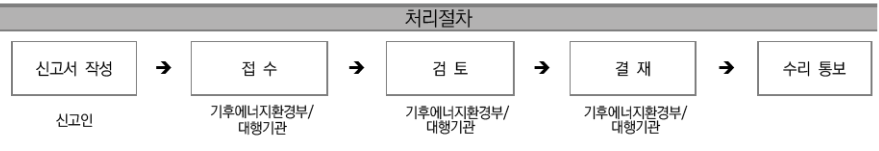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기관(업체)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폐업(휴업) 일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4. 25.>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획 및 사업의 종류	계획 및 사업의 코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주 계약자:	전화번호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계약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공동계약자: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재대행금액	백만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재대행계약기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재대행금액	백만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재대행계약기간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협의내용 통보일자	준공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참여 기술자 현황

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수행 형태	참여 기간
대행계약 이행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수행 형태	참여 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

작성방법

1.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코드: 계획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
(예시) 별표 2. 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하며, 재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을 준 경우에만 작성
-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4.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 기술등급: 기술자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기재,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술자격 또는 주 경력을 기재
- 평가 분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 전문 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 참여 기간: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담당 업무: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협의,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관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18. 1. 1. ~ 2018. 5. 31., 2018. 9. 1. ~ 2019. 12. 31. 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 ·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 ·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사업코드는 ⑩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기재합니다.
(예시) 별표 2의 1. 정책계획 중 바. 신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12. ⑫란의 평가 분야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 · 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평가 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전문 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5. ⑮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 · 협의, 용역 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⑯란의 수행 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17. ⑰란의 대행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대행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8. ⑱란의 대행금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회사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 분야	직무 및 평가 분야		
경력 구분	☐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발급 사유			
발급 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 ·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앞쪽)

발급번호	NO.		사 진 (3.5cm×4.5cm)				
경력 구분	☐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술자 등급, 평가분야 및 전문분야	기술자등급		평가분야	전문분야			
	인정일	등 급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주요 경력						
연 번	사업기간(일수)	사업명		발주자	평가 종류	담당 업무
	참여기간(일수)	사업 종류	사업 코드	평가 분야	전문 분야	수행 형태
	용 역 개 요				용역 금액 (백만원)	경력 구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 본 경력증은 신고 구분에 따라 사업자 확인, 발주자 확인으로 구분하여 발행됩니다.
- 본 경력증은 해당 기술자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 근무처	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 기술자격	변경 전			변경 후			
[] 학력	변경 전			변경 후			
[] 경력	변경 전			변경 후			
[] 교육·훈련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13호의7서식] <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illegible]

※ 발급구분은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앞 쪽)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해당자만 기입)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시험면제 사항 (해당자만 √ 표시)	[] 1차시험 전과목	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1차시험 일부과목	아래 각호의 면제사항 표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협의업무 실무경력 공무원 및 평가분야 실무경력 기사, 기술사만 해당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술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응시자격 증명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 * 일부과목 면제자격 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증명서류	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금액
------	---	--------------------------------------

자르는 선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 일시 및 장소		

수탁기관의 장 직인

※ 주의사항

-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응시자격 및 면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출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수탁기관 발급처)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수탁기관 홈페이지 주소) 각종 문의사항은 (수탁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수탁기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험원서 작성방법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경합판(3cm× 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성명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통·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8.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9. 면제신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8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 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응시 수수료 감면 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험자는 수험(1차, 2차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연필제외)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표지 앞쪽)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76mm×115mm(고급비닐 200g/㎡)

-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표지 뒤쪽)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CERTIFICATE

(1쪽)

주 의 사 항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자체 없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3쪽)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정지기간	정지사유	기록자 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2쪽)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자격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4쪽)

비고

변경사항

날짜	변경항목	변경 후 사항	확인
· ·			
· ·			
· ·			

비고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수탁기관의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사진 (반명함판) (3cm×4cm)
--	---

환경 영향 평가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 · 수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자격	자 격 명(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m²)

(제2쪽)

자격증 재발급		
재발급일자	재 발 급 사 유	기록자인

교 육 훈 련		
기 간(시간)	과 정 명	기관명

행정처분사항			
자격취소			
취소일자	취소사유	처분권자	기록자인

자격정지			
처분일자	정지사유(기간)	처분권자	기록자인